# 실내공기질 관리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실내공기질 오염물질과 관리 대상, 실내공기질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 1
1. 실내공기질 관리의 이해 ..... 4
1.1. 실내공기질 관리의 개념 및 관리계획 ..... 4
1.1.1. 실내공기질 관리 ..... 4
1.1.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등 ..... 4
2.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관리 ..... 6
2.1.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등 ..... 6
2.1.1.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 6
2.2. 실내라돈 관리 ..... 6
2.2.1. 실내라돈조사 ..... 6
2.2.2. 실내라돈 개선 ..... 7
2.3.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 8
2.3.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 8
2.3.2.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개선 ..... 10
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13
3.1.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13
3.1.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 13
3.1.2. 실내공기질 개선 ..... 16
3.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19
3.2.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 19
3.2.2. 실내공기질 개선 ..... 22
3.3.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24
3.3.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 24
3.3.2. 실내공기질 개선 ..... 27
4.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30
4.1. 신축 공동주택 ..... 30
4.1.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 30
4.1.2. 실내공기질 개선 ..... 31
4.2.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 32
4.2.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 32
4.2.2. 실내공기질 개선 ..... 33
4.3. 학교 공기질 관리 ..... 34
4.3.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 34
4.3.2. 실내공기질 개선 ..... 36

# 1. 실내공기질 관리의 이해

## 1.1. 실내공기질 관리의 개념 및 관리계획

### 1.1.1. 실내공기질 관리

#### 개별 법령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 라돈 관리
  - 인체에 유해한 라돈 물질에 대해 실내라돈조사, 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7 참조).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터미널,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참조).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새집증후군이 문제되는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현황을 알리고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참조).
  - 또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한 건축자재(실내마크 부착 건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참조).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참조).

##### 「학교보건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 학교의 실내공기질 관리
  - 학교건물 안에서의 공기질에 대한 유지 및 관리기준과 환기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5조 참조).

> ※ 그 밖에 미세먼지 및 대기질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등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등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

-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 이라 함)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4항).

▪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5항).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4제1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4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5제1항).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설치 및 운영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9제1항).

## 2.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관리

### 2.1.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등

#### 2.1.1.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 실내공기오염원

#### 실내공기오염원의 종류

▪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 오염물질 |
|---|---|
| 1 | 미세먼지(PM-10) |
| 2 | 이산화탄소(CO2;Carbon Dioxide) |
| 3 |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
| 4 | 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 |
| 5 | 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 |
| 6 | 이산화질소(NO2;Nitrogen dioxide) |
| 7 | 라돈(Rn;Radon) |
| 8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
| 9 | 석면(Asbestos) |
| 10 | 오존(O3;Ozone) |
| 11 | 초미세먼지(PM-2.5) |
| 12 | 곰팡이(Mold) |
| 13 | 벤젠(Benzene) |
| 14 | 톨루엔(Toluene) |
| 15 | 에틸벤젠(Ethylbenzene) |
| 16 | 자일렌(Xylene) |
| 17 | 스티렌(Styrene) |

### 2.2. 실내라돈 관리

#### 2.2.1. 실내라돈조사

### 실내라돈조사

#### "라돈"이란?

▪ 라돈은 자연방사능 중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한 무색무취의 비활성기체로서 천연에 있는 우라늄이나 토륨이 방사능 붕괴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용어사전 참조).

#### 실내라돈조사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7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7제2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0).

- 조사 목적
- 조사 대상 및 위치
- 조사 기간
- 조사 항목 및 방법
- 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해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7제3항 및 제4항).

#### 실내라돈 측정

▪ 실내공기 중 라돈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측정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알파비적검출법(주 시험방법)
- 연속측정방법(부 시험방법)

> ※ 라돈측정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2.2. 실내라돈 개선

### 실내라돈 개선

#### 라돈지도 작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라돈지도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8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1제1항).

#### 라돈관리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5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9제1항 및 제2항).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9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 라돈저감공법

▪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 포함)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10제1항).

▪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 실내라돈농도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10제2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2).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당 148베크렐(Becquerel, Bq) 이하

## 2.3.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 2.3.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및 방출기준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함)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 포함)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5).

| 오염물질 종류<br>구분 |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총휘발성<br>유기화합물 |
|---|---|---|---|---|
| 1. 접착제 | | 0.02 이하 | 0.08 이하 | 2.0 이하 |
| 2. 페인트 | | 0.02 이하 | 0.08 이하 | 2.5 이하 |
| 3. 실란트 | | 0.02 이하 | 0.08 이하 | 1.5 이하 |
| 4. 퍼티 | | 0.02 이하 | 0.08 이하 | 20.0 이하 |
| 5. 벽지 |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6. 바닥재 |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7.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 |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0.12 이하 | 0.08 이하 | 0.8 이하 |
| |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0.05 이하 | 0.08 이하 | 0.4 이하 |

※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h로 합니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합니다.

▪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및 공급

▪ 위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본문).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호).

## 건축자재의 표지

### 건축자재 표지 부착

▪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

▹ 건축자재의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9 및 별표 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않거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자재는 건축자재 표지를 사용해는 안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2항).

#### 위반 시 제재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 등에 표지를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제4호).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7호의3).

### 2.3.2.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개선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등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함)에 제출하여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본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전단).

-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재확인 신청 사유서(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시험기관은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함)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또한, 시험기관은 방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험확인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

※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을 받은 경우

-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채취·검사한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을 취소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채취·검사한 결과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품명, 오염물질 채취·검사 일자,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를 통지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 위에 따른 확인의 취소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3호).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회수 및 결과 제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건축자재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4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축자재의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5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경우: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

▪ 건축자재 회수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자재를 모두 회수하고, 건축자재 회수 결과보고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7서식)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 위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3호).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공표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건축자재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 본문).

- 회수 등의 조치를 나타내는 표제
- 건축자재명 및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를 명령한 사유
- 오염물질 채취·검사 결과 및 일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검사한 경우에만

해당)

- 오염물질 방출 확인 등의 일시, 표지를 붙여 공급한 시점 등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제조·수입에 관한 정보

▪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건축자재가 널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 단서).

## 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3.1.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3.1.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적용대상**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 구분 | 적용대상 |
|---|---|
|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천㎡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 이상인 경우를 포함 |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연면적 2천㎡ 이상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연면적 2천㎡ 이상 |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5천㎡ 이상 |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천5백㎡ 이상 |
| 도서관 | 연면적 3천㎡ 이상 |
|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3천㎡ 이상 |
| 대규모점포 | 모든 대규모점포 |
| 장례식장 | 연면적 1천㎡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
| 영화상영관 |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
| 학원 | 연면적 1천㎡ 이상 |
| 전시시설 | 연면적 2천㎡ 이상(옥내시설로 한정)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300㎡ 이상 |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1천㎡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측정내용**

**실내공기질 측정**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보존(이하 "측정 등"이라 함)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 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측정주기 및 측정시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오염물질이 아래의 1.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아래의 2.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별표 2 및 별표 3).

1.

| 오염물질 항목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이산화탄소 |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 일산화탄소 |
|---|---|---|---|---|---|---|

2.

| 오염물질 항목 | 이산화질소 | 라돈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
|---|---|---|---|---|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1호).

※ 다만,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과 다른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 결과보존의무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전단).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s://www.inair.or.kr/)에 입력한 경우에는 위의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후단).

## 측정방법

### 측정망 설치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제1항).

### 측정기기 부착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예비형식승인 포함)을 받은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

▪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예비형식승인 포함)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제2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승강장 및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여 위에 따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

### 측정대상 오염물질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별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

| 구분 | 측정대상 오염물질 | | | |
|---|---|---|---|---|
| | 미세먼지 (PM-10) | 이산화 탄소 | 일산화 탄소 | 이산화 질소 |
|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 O | O | | O |
|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 O | O | O | O |
| 철도역사의 대합실 | O | O | | O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O | O | O | O |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O | O | | |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O | O | | O |
| 도서관 | O | O | | |
| 박물관 및 미술관 | O | O | | |
| 대규모점포 | O | O | | |
| 장례식장 | O | O | O | |
| 영화상영관 | O | O | | |
| 학원 | O | O | | |
| 전시시설 | O | O | |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O | O | O | |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O | O | | |

### 3.1.2. 실내공기질 개선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권고기준 및 개선명령 등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전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참조).

| 오염물질 항목<br>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이산화탄소(ppm) |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CFU/㎥) | 일산화탄소(ppm) |
|---|---|---|---|---|---|---|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 | 100 이하 | 4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전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참조).

| 오염물질 항목<br>다중이용시설 | 이산화질소(ppm) | 라돈(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CFU/㎥) |
|---|---|---|---|---|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1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4제1항).

-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호)
- 철도역사의 대합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3호)

▪ 대중교통시설에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5).

- 집진(集塵), 탈취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기기
-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어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여과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개선명령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개선명령이유
- 개선계획서의 제출
- 개선기간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

### 위반 시 제재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을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2항).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교육

##### 교육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본문).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각각 6시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적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위반 시 제재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4호).

### 3.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3.2.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 적용대상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 구분 | 적용대상 |
|---|---|
| 의료기관 |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 |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 이상 |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천㎡ 이상 |
| 어린이집 | 연면적 430㎡ 이상 |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연면적 430㎡ 이상 |

## 측정내용

### 실내공기질 측정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보존(이하 “측정 등”이라 함)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 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측정주기 및 측정시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오염물질이 아래의 1.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아래의 2.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별표 2 및 별표 3).

1.

| 오염물질 항목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이산화탄소 |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 일산화탄소 |
|---|---|---|---|---|---|---|

2.

| 오염물질 항목 | 이산화 질소 | 라돈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
|---|---|---|---|---|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2호).

※ 다만,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과 다른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 결과보존의무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전단).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s://www.inair.or.kr/)에 입력한 경우에는 위의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후단).

## 측정방법

### 측정망 설치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제1항).

### 측정기기 부착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예비형식승인 포함)을 받은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

### 측정대상 오염물질

▪ 취약계층 이용시설별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

| 구분 | 측정대상 오염물질 | | | |
|---|---|---|---|---|
| | 미세먼지 (PM-10) | 이산화 탄소 | 일산화 탄소 | 이산화 질소 |
| 의료기관 | O | O | | |
| 산후조리원 | O | O | | |
| 노인요양시설 | O | O | | |
| 어린이집 | O | O | | |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O | O | | |

### 3.2.2. 실내공기질 개선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권고기준 및 개선명령 등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전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참조).

| 오염물질 항목<br>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이산화탄소(ppm) |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CFU/㎥) | 일산화탄소(ppm) |
|---|---|---|---|---|---|---|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75 이하 | 35 이하 | 1,000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10 이하 |

▪ 위와 같이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3).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전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참조).

| 오염물질 항목<br>다중이용시설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곰팡이 (CFU/㎥) |
|---|---|---|---|---|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0.05 이하 | 148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 개선명령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개선명령이유
- 개선계획서의 제출
- 개선기간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

### 위반 시 제재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2항).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소유자 등 교육

### 교육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본문).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소유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각각 6시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적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위반 시 제재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4호).

## 3.3.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3.3.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 적용대상

#### 실내주차장 등 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실내주차장 등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 구분 | 적용대상 |
|---|---|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천㎡ 이상(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연면적 3천㎡ 이상 |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천㎡ 이상 |
|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객석 수 1천석 이상 |
|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

## 측정내용

### 실내공기질 측정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보존(이하 “측정 등”이라 함)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 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측정주기 및 측정시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오염물질이 아래의 1.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아래의 2.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별표 2 및 별표 3).

1.

| 오염물질 항목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이산화탄소 |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 일산화탄소 |
|---|---|---|---|---|---|---|

2.

| 오염물질 항목 | 이산화질소 | 라돈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
|---|---|---|---|---|

▪ 실내주차장의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1호).

※ 다만, 실내주차장과 다른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 결과보존의무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전단).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s://www.inair.or.kr/)에 입력한 경우에는 위의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후단).

## 측정방법

### 측정망 설치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제1항).

### 측정기기 부착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예비형식승인 포함)을 받은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

### 측정대상 오염물질

▪ 실내주차장 등 시설별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

| 구분 | 측정항목 | | | |
|---|---|---|---|---|
| | 미세먼지 (PM-10) | 이산화 탄소 | 일산화 탄소 | 이산화 질소 |
| 실내주차장 | O | O | O | O |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O | O | | |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O | O | | |
|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O | O | | |
|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O | O | | |

### 3.3.2. 실내공기질 개선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권고기준 및 개선명령 등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

▪ 실내주차장 등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전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참조).

| 오염물질 항목 /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이산화탄소(ppm) |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CFU/㎥) | 일산화탄소(ppm) |
|---|---|---|---|---|---|---|
|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1,000 이하 | 100 이하 | - | 25 이하 |
| 실내 체육시설, 실내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 이하 | - | - | - | - | - |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전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참조).

| 오염물질 항목<br>다중이용시설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곰팡이 (CFU/㎥) |
|---|---|---|---|---|
| 실내주차장 | 0.03 이하 | 148 이하 | 1,000 이하 | - |

### 개선명령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개선명령이유
- 개선계획서의 제출
- 개선기간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

### 위반 시 제재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을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2항).

## 실내주차장 등 시설 소유자등 교육

### 교육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본문).

▪ 실내주차장 등 시설의 소유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각각 6시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적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위반 시 제재

▪ 실내주차장 등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4호).

## 4.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4.1. 신축 공동주택

#### 4.1.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적용대상**

**신축 공동주택별 적용대상**

▪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를 지켜야 하는 신축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구분 | 적용대상 | 규모 |
|---|---|---|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필로티 부분 및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함)가 5개 층 이상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 100세대 이상 |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필로티 부분 및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함)가 4개 층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 |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말하며,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포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 |

**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는 입주예정자를 선정할 때에는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리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시키는 방법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 그 밖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 위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라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폼알데하이드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티렌
- 라돈

### 4.1.2. 실내공기질 개선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및 측정결과 등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3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별표 4의2).

|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
|---|---|---|
| 1 | 폼알데하이드 | 210μg/㎥ 이하 |
| 2 | 벤젠 | 30μg/㎥ 이하 |
| 3 | 톨루엔 | 1,000μg/㎥ 이하 |
| 4 | 에틸벤젠 | 360μg/㎥ 이하 |
| 5 | 자일렌 | 700μg/㎥ 이하 |
| 6 | 스티렌 | 300μg/㎥ 이하 |
| 7 | 라돈 | 148Bq/㎥ 이하 |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및 공고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후에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 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 위반 시 제재

▪ 시공자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5호).

## 4.2.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 4.2.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 적용대상

#### 대중교통차량별 적용대상

▪ 실내공기질 관리의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4항).

| 구분 | 적용대상 |
|---|---|
| 도시철도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 철도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 시외버스 |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 |

#### 측정내용

#### 실내공기질 측정

▪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제1항 단서).

#### 측정주기 및 측정대상 오염물질

▪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오염물질을 1년에 1회 측정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 초미세먼지(PM-2.5)
- 이산화탄소

#### 측정대상차량

▪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차량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 도시철도 및 철도: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편성의 100분의 20(50편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편성을 말함)
-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차량의 100분의 20(50차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차량을 말함)

#### 측정결과

▪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위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제2항).

▪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입력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의 제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의 입력

▪ 측정결과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9조제2항].

#### 결과보존의무

▪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5항).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s://www.inair.or.kr/)에 입력한 경우에는 위의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

### 측정방법

#### 측정망 설치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제2항).

## 4.2.2. 실내공기질 개선

### 대중교통차량 제작 및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

※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및 운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3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2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철도차량, 고속형 시외버스
- 시·도지사: 도시철도차량, 직행형 시외버스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및 별표 4의3 제1호).

| 오염물질 항목 | 기준 | |
|---|---|---|
| | 혼잡시간대 | 비혼잡시간대 |
| 초미세먼지(PM-2.5) | 50μg/㎥ | |
| 이산화탄소 | 2,500ppm | 2,000ppm |

※ 위 권고 기준은 오염물질항목별 농도의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별 소속 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말함)을 말합니다.

※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토·일요일, 설날 및 추석날 등 명절과 공휴일을 말하고,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 4.3. 학교 공기질 관리

### 4.3.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 적용대상

#### 학교별 적용대상

▪ 학교에서의 실내공기질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 | 적용대상 |
|---|---|
| 1 |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 2 |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의 학교를 말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조).<br>가. 초등학교<br>나. 중학교, 고등공민학교<br>다.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br>라. 특수학교<br>마. 각종 학교 |
| 3 |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의 학교를 말합니다(「고등교육법」 제2조).<br>가. 대학<br>나. 산업대학<br>다. 교육대학<br>라. 전문대학<br>마.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br>바. 기술대학<br>사. 각종학교 |

## 점검 내용

### 공기질 위생점검

▪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의 상태가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전단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제2항).

›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후단).

▪ 학교의 장은 공기질 점검에 관한 업무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3항).

### 점검주기

▪ 학교의 장은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의2제1항).

### 결과 비치

▪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 점검 방법

### 점검종류 및 시기

▪ 공기질 위생점검의 종류과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별표 6).

| 점검종류 | 점검시기 |
|---|---|
| 일상점검 | 매 수업일 |
| 정기점검 | 매 학년 : 2회 이상.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서 점검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름 |
| 특별점검 | 감염병 등에 따라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br>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br>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br>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 오염물질 중 라돈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최초 실시 학년도 및 그 다음 학년도의 점검 결과가 각각 유지기준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및 1층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주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비고).

####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의2 제2항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 4.3.2. 실내공기질 개선

####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

▪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4의2).

1. 유지기준

| 오염물질 항목 | 기준(이하) | 적용시설 | 비고 |
|---|---|---|---|
| 미세먼지 | 35μg/㎥ | 교사 및 급식시설 | 직경 2.5㎛ 이하 먼지 |
| | 75μg/㎥ | 교사 및 급식시설 | 직경 10㎛ 이하 먼지 |
| | 150μg/㎥ | 체육관 및 강당 | 직경 10㎛ 이하 먼지 |
| 이산화탄소 | 1,000ppm | 교사 및 급식시설 |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

| | | | |
|---|---|---|---|
| 포름알데히드 | 80㎍/㎥ |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함) 및 급식시설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총 부유세균 | 800CFU/㎥ | 교사 및 급식시설 | - |
| 낙하세균 | 10CFU/실 | 보건실 및 급식시설 | - |
| 일산화탄소 | 10ppm | 개별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 이산화질소 | 0.05ppm | | |
| 라돈 | 148Bq/㎥ |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함), 1층 및 지하의 교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교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석면 | 0.01개/cc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 하는 학교 | - |
| 오존 | 0.06ppm | 교무실 및 행정실 |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
| 진드기 | 100마리/㎡ | 보건실 | - |
| 벤젠 | 3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톨루엔 | 1,0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에틸벤젠 | 36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자일렌 | 7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스티렌 | 3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2. 관리기준

| 대상 시설 | 중점관리기준 |
|---|---|
| 신축학교 |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br>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br>3) 책상·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br>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개교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br>2) 기존 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br>3) 책상·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급식시설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보건실 |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다음의 설비 및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의3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2.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1. 위의 공기정화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2. 위 1.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 점검결과 보고 및 공개

▪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가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4항).

▪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6항 전단).

▹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6항 후단).

### 시설 보완 등

▪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 학교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의 상태가 유지·관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